

(앞쪽)

↑
8
cm
↓

사실조사원 증명서

발급번호

성명

증명서 유효기간

3
cm
↓

사진

← 2.5cm →

위의 사람은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.

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·면·동장 및 출장소장

직인

← 6cm →

60mm×80mm[보존용지(1종) 120g/m²]

주의사항

1. 이 증표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.
2. 이 증표는 사실조사 시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3. 이 증표의 소지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.